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1. 10. 29. 전부개정 2022. 5.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사업에 따라,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총괄기관"이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하다.
- 2. "전담기관"이란 본건 사업에 관한 총괄기관의 업무 세부 사항을 직접 또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 제52조의'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3. "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하'협약기관')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말한다.
- 4.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란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 5. "전문가위원회"란 본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6. "공급기업"이란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담기관에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7. "수요기업"이란 수행기관이 선정하여 공급기업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등을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 8.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하여 최적의 정보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9. "보안솔루션"이란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 10. "정부지원금"이란 수요기업이 제공받는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등에 대한 비용 중 총괄기관을 대리하여 수행기관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11. "기업분담금"이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에 대해 분담하는 비용(현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본건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건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본건 사업의 총괄 관리
- 2. 본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3. 전담기관 관리·감독

제5조(전담기관)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본건 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홍보
- 2. 공급기업 모집·선정·관리
- 3. 운영지침 제·개정
- 4. 전문가위원회 운영
- 5. 본건 사업을 위한 누리집 운영·관리
- 6. 기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수행기관) 협약기관 및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요기업 모집·선정·관리
- 2.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 3. 수요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 4.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교육 및 세미나
- 5. 지역정보보호협의회 운영
- 6. 기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공급기업)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7조에 따른 협약 규정 숙지와 준수
- 2. 운영지침 숙지와 준수
- 3. 제14조에 따라 수요기업에 제공·공급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유지
- 4. 기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수요기업) 수요기업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7조에 따른 협약 규정 숙지와 준수
- 2. 운영지침 숙지와 준수
- 3. 기업분담금 부담
- 4. 본건 사업의 점검에 필요한 협조
- 5. 기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전문가위원회

- 제9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 산업, 법제 및 정책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자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 ② 전문가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심의에서 제외 한다.
 - 1. 평가·심의대상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2. 평가·심의대상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 3. 그 밖에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위원회 직무) 전문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요기업 평가 기준 마련
 - 2. 본건 사업결과보고 검수
 - 3. 수요기업·공급기업 제재 사유 검토 및 정부지원금 환수 심의
 - 4. 기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전문가위원회 운영) ① 전문가위원회는 본건 사업 시작 전·후 필요시 개최한다.
 - ② 전문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장 공급기업 신청 및 선정

- 제12조(공급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정보보호 컨설팅 기업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한정한다.
 - ② 보안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인 포함)로, 본건 사업 신청일 기준 정보보호제품을 직접 개발·제공 중인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1. 타 사가 개발한 제품·서비스를 단순 유통·재판매하는 경우(리셀러, 총판 등)
-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포함)
- 4. 휴·폐업 중인 기업
- 5.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판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경우
- 6.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 7. 사업목적 또는 서비스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8.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사유(부정당기업 지정 등)가 발생한 기업(대 표자 포함)
- ④ 기타 세부 참여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은 공고문에 따른다.
- **제13조(공급기업 평가 및 선정)** ① 전담기관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급기업 선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사업자 및 보안솔루션은 별도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공급을 중지 할 수 있다.
- 제14조(공급) ①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신청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공급 제품의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미이행 또는 제2항에 대한 임의적인 중단·거부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공급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은 특정 공급기업의 독과점 및 특정 제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기업의 판매금액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수요기업 신청 및 선정

- 제15조(수요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수요기업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인포함)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 3. 휴·폐업 중인 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 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블록체
- 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 5. 해당 년도에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서 보안 관련 제품을 지원받은 기업
- ③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별도의 신청서와 제출물을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직접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기타 세부 참여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은 공고문에 따른다.
- 제16조(수요기업 평가 및 선정)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요기업이 속한 지역의 수행기관에 평가·선정을 위임한다.
 - ② 수행기관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식별 불가하거나 제출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수행기관은 수요기업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전담기관이 정한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선정 후 수요기업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사업관리

-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과 공급기업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급기업에게 '보안 솔루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하며, 확약기간은 수요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 ② 수행기관과 수요기업은 본건 사업 시행을 위한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시로 한다.
 - ③ 수행기관과 공급기업은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의 제공·공급 및 비용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 1.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
 - 2. '보안솔루션 공급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
- 제18조(사후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성과 확인 및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태점검 기간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지원 사업 협약서' 체결 후 5년이내로 한다.

- 제19조(제재) ①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 된 경우 고의와 중대성 등의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건 사업에 관하여 협약의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1.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이중계약(페이백 등)을 통해 보안솔루션을 공급받은 경우
 - 2.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사업 신청의 대리 신청, 접수 등이 확인된 경우
 - 3. 사업 신청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공급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계약을 허위(서류상 공급, 사업 시작 전 공급 등)로 작성한 경우
 - 5. 공급기업이 수요기업과의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기술지원 등)
 - 6.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 7. 기타 본 지침 및 제17조에 따른 협약상의 의무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②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협약의 취소 또는 제재조치 사항 결정에 따라, 공급·수요기업에 제공한 서비스 요금 및 보안솔루션 구매 지원금에 대해 환수 또는 채권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선정취소 또는 협약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수행기관, 공급기업은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수요기업의 비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작성하는 우수사례 및 내부 통계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21. 10. 29.>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2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22년 사업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이전에 공고된 사업의 사업비 편성·집행, 사용기준, 정산 등 사후 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등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 다.

[별지 제1호] 공급확약서

<u>5</u>	보안솔루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공 급 기 업 명 (제조사/저작권자)				
공급대상 제품/서비스 명				
1. 당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전담기관과의 협약기간 동안 수요기업에 상기 제품을 성실히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수요기업과 체결한 협약(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기간 동안 공급 제품에 대해 기술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x년 월 일			
	제조사: (직인) 대표자: 주 소:			
	담당자/연락처:			

[별지 제2호]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협약서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협약서				
지원 항목	정보보호 컨설팅			
협약금액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 <i>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i>	원(VAT 포함)		
	정부지원금: 일금	원(VAT 포함)		
	기업분담금: 일금	원(VAT 포함)		
지원 항목	보안솔루션			
협약금액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 <i>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i>	원(VAT 포함)		
	정부지원금: 일금	원(VAT 포함)		
	기업분담금: 일금	원(VAT 포함)		

- 1. 본 협약은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기업에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시로 한다.
- 2.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은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르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정산한다.
- 3.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은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목록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보안솔루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하여야 한다.
- 보안솔루션을 다른 목적(미사용, 재판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사업 참여 의사가 없거나, 사업 도중 또는 완료 후 취소 등을 요구할 경우 협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부지원금, 사업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징구 및 추후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 4.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기타 유의사항은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 6.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년 월 일

수 행 기 관 : (직인)

수행기관 주소 :

수 요 기 업 : (직인)

수요기업 대표 : 수요기업 주소 :

[별지 제3호]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협약서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협약서					
수요기업 정보	기업명				
	담당자/직책				
	연락처				
	주 소				
서비스 제공 기간	202x. xx. xx. ~ 202x. xx. xx				
소요금액	총 협약금액: 일금	원(VAT 포함)			
	정부지원금: 일금	원(VAT 포함)			
	기업분담금: 일금	원(VAT 포함)			

- 1. 본 협약은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2. 공급기업은 본 협약을 근거로 수요기업과 정보보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3.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체결된 공급계약의 원활한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공급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4.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정산을 위해 수요기업과 맺은 계약서, 컨설팅 결과 보고서, 수요기업이 납입한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수요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수행기관에 사전에 제출하고, 공문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 한다.

202x년 월 일

5.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수행기관과 공급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수행기관: (직인) 주 소: 공급기업: (직인) 대 표 자:

주 소:

[별지 제4호] 보안솔루션 공급 협약서

보안솔루션 공급 협약서					
수요기업 정보	기업명				
	담당자/직책				
	연락처				
	주 소				
공급제품(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 (납품 예정일)	202x. xx. xx. ~ 202x. xx. xx				
소요금액	총 협약금액: 일금	원(VAT 포함)			
	정부지원금: 일금	원(VAT 포함)			
	기업분담금: 일금	원(VAT 포함)			

- 1. 본 협약은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2. 공급기업은 본 협약을 근거로 수요기업과 보안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맺은 계약서의 납품일자(서비스 제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3.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체결된 공급계약의 원활한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공급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4. 보안솔루션 제공에 따른 비용 정산을 위해 수요기업과 맺은 계약서, 납품확인서(제품 설치 증빙 자료, 서비스 제공 증빙자료 등), 수요기업이 납입한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수요기업에게 발행한 세금 계산서 사본 등을 수행기관에 사전에 제출하고, 공문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 한다.

202x년 월 일

5.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수행기관과 공급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수행기관: (직인) 주 소: 공급기업: (직인) 대 표 자: 주 소: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o ICT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검토 o 지원 대상 선정·확정 및 정보보호 지원 o 지원 사업 성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실태점검 o 지원 사업 통계 작성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 항목	o 신청인 성명,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o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간 활용 - 지원사업 신청조건에 따른 지원 현황 관리 - 보안솔루션 지속 사용 여부 확인 - 차년도 설문조사 등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지원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등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202x년 월 일 신청인: (서명)			